
중국 건설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방안

2016. 05





- I . 문제 제기
- II . 건설면허 제도 등 운영실태
- III . PPP방식 도입 및 운영실태
- IV . Mega FTA시대, 중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전망
- V . 중국 건설시장 진출 및 협력방안



I. 문제 제기

- 2010년 이후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나, 외국업체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기업의 수주실적은 저조한 상황
- 한편, 최근 중국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제도 개정과 PPP 방식도입 활성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Mega FTA 환경이 중국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조달시장을 중심으로 분석 및 전망함으로써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Mega FTA 환경 및 PPP사업의 활성화 전망, 중국 건설면허제도의 변화 등 최근 중국건설시장의 변화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국내건설기업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II. 건설면허 제도 등 운영실태

1. 경제 동향

- 제조업 중심의 수출·투자 주도형 성장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 왔으나, 최근 과잉투자,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림자금융 부실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세는 둔화됨
 -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7.7%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도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둔화로 7.7%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4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7.4%로 감소
 - 2015년에는 중국 정부의 소비, 서비스업 육성 정책에 따라 3차산업이 성장률을 이끌었지만 대외무역 부문의 둔화(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4조584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 급락)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를 최초로 하회함**
- **경제성장률 하락 기조에 따라 이미 2014년 중국정부는 경제의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뉴노멀(新常态, 신창타이) 시대의 도래를 천명함**
 - 중국정부는 2014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
 - 중국은 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중국경제의 뉴노멀 진입을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면적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추진을 강조**하였음

<표 1>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10.4	9.3	7.7	7.7	7.4	6.9
재정수지 / GDP	-1.2	0.6	0.2	-1.9	-1.8	-3.5
소비자물가상승률	3.3	5.4	2.7	2.6	2.0	1.4

1. 경제 동향

-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201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실제 재정적자율은 목표치를 상회함
- 재정적자가 심화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4년 10월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제고 및 부채 증가 억제를 추진**
 -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융자플랫폼 등을 통한 우회적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은 공익적 자본지출 또는 기존 채무 상황에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제한
 -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PPP 사업 모델 활용 등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함
-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음

<표 2> 2013~2016년도(목표) 중국 재정수지 적자

단위: %, 억 위안

	2016년 목표	2015년		2014년		2013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내외)	6.5~7.0	7.0	6.9	7.5	7.4	7.5	7.7
재정수지 적자	21,800	16,200	23,550	13,500	11,312	12,000	11,002
GDP대비 재정적자율	-3.0	-2.3	-3.5	-2.1	-1.8	-2.2	-1.9

1. 경제 동향: 중국 건설시장

II. 중국건설면허 관련 주요제도 변화와 시사점

-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교통 및 발전설비 용량 확충, 신재생 에너지 개발, 서민주택건설 등 **대형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주할 전망이다**
- 기타 도시화와 균형발전 및 환경대책 등의 정책으로 **중국은 세계최대 건설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Global Insight는 '15년 중국 건설시장 규모를 약 2.7조불로 추정하였음. 이는 세계 건설시장의 약 27%에 해당
 - 그러나, 외국업체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우리기업의 수주실적은 저조한 상황

<표 3> 중국 건설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

항목	'14e	'15f	'16f	'17f	'18f
건설시장 규모	27,903	28,627	29,046	31,154	33,618
건설시장 성장률	6.8	6.3	4.5	4.2	4.2
건설/GDP 비중	6.6	6.6	6.5	6.4	6.3

<표 4> 국내 건설기업 중국 수주액 추이

단위: 만 달러, %

구분	전체 해외 수주액	중국 수주액	비중
2010년	7,157,881	60,393	0.8
2011년	5,914,431	105,766	1.8
2012년	6,488,068	156,326	2.4
2013년	6,521,166	53,691	0.8
2014년	6,600,993	79,337	1.2
2015년	4,614,435	151,205	3.3

출처: Global Insight,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 중국건설업 면허제도

- 중국의 건설기업은 그 소유제 형식에 따라 국유기업(全民所有制), 도시집체기업(城鎮集體企業:집체소유제), 농촌집체기업(農村集體企業), 민영기업으로 구분되며, 그 중 국유기업의 비중이 큼
 - 국유기업수와 집체기업은 감소추세이고, 비공유제기업(민영기업)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국민경제기업분류국가표준(GB4754-2002)에 따르면 건설업의 부문은 건축 및 토목 공정건설업, 건축설치업, 건축장식업, 기타건설업의 4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 건설업 면허는 **종합시공 면허, 전문시공 면허, 노무제공 면허**로 구분됨
 - **종합시공**은 주택건축, 도로, 철도, 통신, 항만·수로, 수리·수력발전, 전력, 석유화학, 도시인프라 등 **12개 공종**으로 세분되며, **등급은 특급과 1~3급으로 구분**
 - **전문시공**은 지반공사, 인테리어, 커튼월, 골조, 소방설비, 기계설치, 방수, 환경, 교량, 터널 등 **60개 업종**으로 구분되며, **등급은 1~3급으로 구분**
- 시공기업의 기업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기준은 **종합면허 1급 그리고 전문면허 1급 기업은 중앙 건설부에서 2급 이하는 지방정부 건설주관 부처가 관장함**

2. 중국건설업 면허제도

● 2015.1.1.자로 중국 정부는 건설 면허 취득 조건을 일부 변경함

- 순자산 기준이 변경됨. (1급) 6천만 위안 → 1억 위안 (상향조정), (2급) 8천만 위안 → 4천만 위안 (하향조정), (3급) 2,400만 위안 → 800만 위안 (하향조정)
- 엔지니어 보유 기준이 완화됨. (1급) 고급10명, 중급 60명 → 고급 1명, 중급 30명, (2급) 고급 2명, 중급 20명 → 중급 15명, (3급) 중급 10명 → 중급 6명
- 시공실적 조건도 완화됨

<표 5> 면허 취득 조건 (2015. 1. 1)

구분	1급	2급	3급
순자산	1억 위안(약 1,634만 불)	4,000만 위안(약 653만 불)	800만 위안(약 130만 불)
엔지니어	고급 1명 중급 30명	중급 15명	중급 6명
건축사	12명 이상	9명 이상	5명 이상
관리자	50명 이상	30명 이상	15명 이상
노무자	150명 이상	75명 이상	30명 이상
시공실적	아래 4개항목중 2개 이상 조건 부합		
층수	25층 이상 1개 혹은 18~24층 2개	12층 이상 1개 혹은 8~11층 2개	-
			-
높이	100m이상 1개 혹은 80~100m 2개	50m이상 1개 혹은 35~50m 2개	-
			-
건축면적	3만m2이상 1개 혹은 2~3만m2 2개	1만m2이상 1개 혹은 0.6~1만m2 2개	-
			-
Span 길이	RC구조 30m이상 1개 혹은 철골구조 27-30m이상 2개	RC구조 21m이상 1개 혹은 철골구조 18~21m이상 2개	-
	RC구조 36m이상 1개 혹은 철골구조 30~36m이상 2개	RC구조 24m 이상 1개 혹은 철골구조 21~24m이상 2개	-

3. 외상투자 건설기업 관련 제도

II. 중국건설면허 관련 주요제도 변화와 시사점

-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시공하려면 WTO 건설서비스 분야 양허안에 따라 **먼저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함**
 - 외국기업은 투자위 또는 경제무역위 등에 외국인투자 현지법인 설립신청을 하여 외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인증과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을 취득하여야 함
- **그 후, 건설업 면허 신청을 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외상투자건설기업(外商投資建築業企業) 및 외국인투자 건설시공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 기업설립 및 자질 신청 시에는 설립신청서 · 타당성보고서 · 정관 · 법인등기등록 · 은행 신용증명 · 경영 및 기술인원 증명서류 ·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함
- **외상독자건설기업(100% 투자)의 공사도급 범위는 외국인투자 · 자금공여공사 및 차관공사, 그리고 중국업체 단독수행 곤란공사(高기술공사) 등에 제한됨**
- 외상합자합작건설기업의 공사도급 범위는 현지기업과 동일하게 관급공사 등 수행 가능
 - 중외합자 · 합작기업(외상건설기업도)의 경우 중국측의 출자총액이 25%이상이어야 함
 - 합자기업: 중국과 외국기업의 공동 자본출자 법인
 - 합작기업: 중국 및 외국 기업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설립하지 않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4. 외국업체 진출 환경

II. 중국건설면허 관련 주요제도 변화와 시사점

- **외국업체의 단독 공사에 대한 규제 및 복잡한 입찰 제도 등으로 인해 중국 건설시장은 외국업체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함**
 - 외국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는 **파이낸싱을 동반한 부동산 개발사업과 BOT사업 그리고 중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특수기술공사나 특수 플랜트 공사 등임**
 - 구미 선진국 업체들은 주로 플랜트(발전 및 석유화학 등)를 위주로 자국설비의 이전이나 엔지니어링 및 핵심설비의 수출에 주력
 - 일부 일본계나 홍콩 화교계 개발업체가 아파트나 오피스빌딩 등 부동산사업 위주로 진출, 특히 홍콩계 기업들은 오피스빌딩 건설분야에서 현지인맥을 활용한 건설 및 판매 등의 현지화 전략이 주효하여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들 분야에도 시공부문은 대부분 중국업체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지 못한 기술은 현지기업과 J/V를 요구 하는 등 기술축적을 목적으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업체의 시공부문 참여는 매우 제한적임**
 - 따라서 시공보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초기에는 외국업체들이 화학플랜트와 도로, 교량, 댐 등 인프라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업체의 기술이 축적되어 고난도 특수기술 이외의 경우에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지금은 주로 전력분야를 중심으로한 BOT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 그 이유는 전력을 현지정부에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판매대금 확보가 가능하며 경제발전으로 인한 전력소비 증가로 확실한 수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



III. PPP방식 도입과 운영실태

1. 중국 PPP사업 도입 연혁 및 특징

- 1980년대 홍콩 자본의 참여에 의한 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민간투자사업 도입
 - 1990년대에 도로, 고속도로, 항만, 교량, 상수도 시설, 통신, 공항, 철도 등 분야로 민간자본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1995년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금에 의한 BOT사업 활성화를 위해 BOT Circular를 발표
 - 이후 1997년까지 증가 후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2004년까지는 침체상태를 보였음
 - 다시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미국 금융위기 이후 다시 침체
- PPP사업모델의 유형에 따라 BOT 방식과 변형된 BOT 방식, 매각 방식 및 관리, 리스 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지분투자 유형에 따라 합작(Sino-Foreign) 방식과 외국인단독(WFO, Wholly Foreign-Owned)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인프라투자 분야 민관협력사업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PPP 모델 유형별로 보면 **주로 BOT방식** 이 주류를 이룸
 - 중국은 대부분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있어 주로 외국인 지분투자자와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간 **합작(Joint Venture)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 하는 경우가 많음

2. 최근 정부정책동향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중국정부의 재정지출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투자여력이 한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인프라분야에서 민간자본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2014년 6월 80개 민간자본 시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
 - 또한,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에 지방채 자체 발행 및 자체 상환의 방식 외에 PPP 사업모델 권장
- 각 지방정부는 2015년 ‘정부업무보고’ 에서 인프라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을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발표
 - 이 중 교통 및 환경 분야에서 PPP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교통부문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산둥, 광둥 등 동부 연해에 위치한 경제발전지역의 경전철/지하철 건설사업에서 PPP사업이 계획되고 있음
 - 에너지 부문은 석유 및 자원개발, 송유/가스관, 송배전시설, 발전 등을 포괄하며, 주로 도시난방공급 사업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있음
 - 환경 부문에는 민간사업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수처리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소도시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됨

3. 주요 지역별 민자사업 및 지원정책

<표 6> 2015년 중국 각 지역의 민간자본 유치사업 계획

지역	민간자본 유치 추진사업
베이징	· 베이징공항 건설사업 (총투자 800억 위안)
텐진	· 신에너지 자동화 충전시설 건설사업
허베이	· 장자커우의 도시난방 공급사업
산시	· 타이위안 시 오수처리사업
네이멍구	
랴오닝	· 우순시 오수처리사업
지린	· 지린시 수도공급사업 및 난방공급사업
헤이룽장	· 하얼빈(哈尔滨)시 오수/폐기물처리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상하이	· 자딩 오수처리사업
장쑤	· 쿤산(昆山)시 경전철차량* · 쉬저우(徐州)시/쑤저우(苏州)시 지하철 1호선 사업* · 수첸(宿迁)시/쉬저우(徐州)시/난징(南京)시/루가오(如皋)시 오수처리사업* · 쉬저우(徐州)시 수원관리공급사업*
저장	· 항저우(杭州)시 지하철 5호선/6호선 운영사업* · 항저우-하이닝(海宁) 광역전철 운영사업*
안후이	· 허페이(合肥)시 지하철 2호선 사업* · 안칭(安庆)시/마안산(马鞍山)시/츠저우(池州)시 오수처리사업*
푸젠	· 둥산(东山) 수로사업*

지역	민간자본 유치 추진사업
장시	· 지우장(九江)시 생태환경보호사업* · 난창(南昌)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
산둥	· 자오저우(胶州) 해저터널운영사업* · 칭다오(青岛) 체육센터운영사업*
허난	· 신상(新乡)시 경전철 건설사업 · 정저우(郑州航空港区) 수도공급·오수처리사업
후베이	· 상시창장(香溪长江) 교량 건설사업
후난	· 상탄(湘潭)경제기술개발구 오수처리사업*
광둥	· 산터우(汕头)시 해저터널 건설사업
광시	· 수도/난방공급, 오수/폐기물 처리 등 217억 위안(15개 프로젝트)
하이난	
충칭	· 지하철 3호선 운영사업*
쓰촨	· 시샹(西香)/용후이(永会)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이저우	· 퉁즈(桐梓)현 13개 오수처리사업
위닝	· 난밍허(南明河) 수질환경개선사업*
티벳	

주: 볼드체 표시 사업은 중국 재정부에서 승인한 PPP시범사업 프로젝트(총 1,800억 위안 투자규모의 30개 프로젝트)에 속하는 사업

자료: 뉴노멀시대 대응을 위한 2015년 중국 지역별 경제정책과 시사점, KIEP 2015

3. 주요 지역별 민자사업 및 지원정책





IV. Mega FTA 시대, 중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전망

- WTO 도하라운드 가 지연되면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FTA를 활용**
- 특히 지역별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FTA를 설립하는 **메가 FTA가 추세**
 - TPP: 미국 주도의 12개국 FTA
 - 일본은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협상 완료, 회원국 의회 승인 대기 중
 - 미국 대통령 선거로 승인 지연되고 있음
 - TTIP: 미국과 EU의 FTA
 - RCEP: 중국과 ASEAN 주도의 16개국 FTA
 - 한국, 일본, 인도 등 참여
 - 12차 협상 4월에 완료, 협상 지연
 - 한중일 FTA
 - TISA: WTO 회원국들 중 22개국과 EU가 주도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
- 메가 FTA에는 대체로 건설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시장개방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조달서비스 시장이나 공공시설조달/PPP 시장개방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TPP, TISA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RCEP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7> 현재 추진 및 고려중인 시장개방 Mega FTA와 복수간 협정의 사례

협정(협상)	참여국가	주요 내용	협상시작	정부조달 및 공공기업과 관련 내용
TPP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물품과 서비스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투자 외 신통상과제	2005 (본격적 2010)	정부조달과 공기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TTIP	미국, EU	물품과 서비스 시장개방, 투자, 규제개혁,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2013	정부조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RCEP	한국, ASEAN 10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물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 투자 등		정부조달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TISA	한국, 미국, EU 호주,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스위스, 터키	GATS를 기초로 추가적 서비스 시장개방 추진, 모든 서비스 산업 포함, 통신, 금융, 우편서비스 규제 포함, 기타 서비스도 국가별, 산업별로 포함 예상	2013	공공서비스 시장개방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음
한중일 FTA	한국, 중국, 일본	물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 투자 등	2012	시장개방 외 기타 포함분야는 공개되지 않았음. 협상 전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는 정부조달에 대해서 「3국 FTA를 내에서 정보 교류와 경험 공유를 통해 상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가능」 하다고 기술하였음.

2. GPA, FTA와 중국 정부조달 (건설)시장개방

- **WTO GPA**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국제협정
 - GPA 가입국은 일정금액(하한선) 이상의 양허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과 기타기관(주로 공기업)을 개방해야 함
 -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복수간 협정이므로 일부 회원국만이 가입되어 있음
 -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GPA에도 가입하기로 약속하였고 현재 가입 협상 중임. 그러나 양허안이 약하다고 지적받고 가입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한국은 GPA에 가입되어 있고 BOT와 공공시설조달을 시장개방 대상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가입국들은 BOT 및 공공시설조달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정부조달 및 BOT/공공시설 조달을 개방한 경우도 있고 개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칠레, 미국, EU,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개방하고 있음
 - 여타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음

2. GPA, FTA와 중국 정부조달 (건설)시장개방

IV. Mega FTA 시대, 중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전망

<표 8> 한국 FTA의 건설분야 정부조달과 시장개방 하한선 (단위: 1000SDR)

	GPA 가입 여부	한국과의 FTA에서 정부조달분야 포함유무	BOT 및 공공건설포함여부	FTA 조건이GPA와 동일 여부	건설서비스 하한선		
					중앙정부	지역정부	기타기관
2012GPA (소수 회원국은 제외)	-	-	X (소수 회원국만 포함)	-	5000	5000	5000
1994GPA (한국)	-	-	X	-	5000	15000	15000
2012GPA (한국)	-	-	O (한국 및 소수 회원국만 포함)	-	5000	15000	15000
칠레	비회원국	O	O	X	5000	15000	15000
싱가포르	회원국	O	X	X	5000	향후 협상	향후 협상
EFTA	회원국	O	X	O	GPA와 동일	GPA와 동일	GPA와 동일
ASEAN	대다수 비회원	X	-	-	-	-	-
인도	비회원국	X	-	-	-	-	-
미국	회원국	O	O	X	5000	GPA 적용	GPA 적용
EU	회원국	O	O	X	GPA와 동일	GPA와 동일	GPA와 동일
페루	비회원국	O	O	O	5000	15000	15000
터키	비회원국	X	-	-	-	-	-
콜롬비아	비회원국	O	O	O	5000	15000	15000
호주	비회원국	O	O	X	5000	15000	15000
캐나다	회원국	O	O	X	5000	-	-
중국	비회원국	X	-	-	-	-	-
뉴질랜드	비회원국	O	O	X	500	-	-
베트남	비회원국	X	-	-	-	-	-

2. GPA, FTA와 중국 정부조달 (건설)시장개방

- **한중 FTA**에서는 민간 건설서비스 시장만 일부 개방,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이나 공공 시설 조달은 개방하지 않았음**
 - 민간 건설서비스의 경우, 중국회사와 합작하는 경우 시장이 개방되었으며, 단독(한국회사의) 지사로 운영하는 경우, 중국기업과 합작하는 경우 또는 중국업체들의 기술이 부족한 등 일부 경우에만 시장이 개방되었음
 - 정부조달 건설서비스나 공공시설 조달의 경우, 구체적 시장개방은 중국의 GPA 가입협상이 끝난 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 TPP, TTIP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FTA, 그리고 APEC에서는 **규제수렴(Regulatory Coherence)**이 논의되고 있으며, 선진국 FTA에서는 권고 또는 의무사항으로 포함함
 - 규제수렴이란 불필요하게 복잡한 법이나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작업을 시도하고, 여기에 국내인과 더불어 외국인이나 외국업체에게도 발언권과 참여권을 부여
 - 규제수렴으로 외국업체에게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나 차별적인 절차를 개선 가능

3. 국제 개발은행 등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개방

-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건설사업이라도 **GPA와 유사한 투명성 조건 및 국제 경쟁입찰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시한, 서류, 입찰 정보를 투명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공정한 국제입찰을 시행해야 하며, 수의계약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됨
 - 이 경우, 외국업체를 제한하거나 외국업체에게 차별적인 국내 법이나 절차를 사용할 수 없음
- **AIIB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과 유사한 투명성 조건 및 국제 경쟁입찰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업체는 **AIIB 용자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국 인프라 건설시장에 중국업체들과 같은 입지에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음
 - AIIB가 승인한 첫 프로젝트는 ADB와 공동출자로 파키스탄 고속도로 프로젝트
 - 6월에 타지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고속도로 프로젝트 실시 예정, 인도 태양발전소도 가능
 - 2016년 에 12억-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예정, 이 중 일부는 세계은행과 ADB 공동출자
 - 중국기업에 유리한 프로젝트 선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 그러나 합작은 계속 가능
 - 또한 AIIB를 통하여 일대일로(실크로드) 등 중국 외 여타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중국업체와 함께 진출하는 **합작 프로젝트도 고려**할 수 있음



V. 중국 건설시장 진출 및 협력방안

1.1. 중국건설시장 관련 설문 조사

- [제도 및 운영상 애로]요인으로 면허 상향 및 유지의 어려움, 공사진행과정에서 인허가 및 관계관청과의 업무 지연, 현지 발주자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부족 등 3가지
 - 면허제도의 애로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기술사, 엔지니어 등 기술관리인원 비용 과다 및 인원 유동성이 높은 점은 여전히 애로요인으로 지적됨
- 진입규제의 개선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교우위 분야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제도적 장벽 중 한국정부가 우선 개선해주시기를 희망하는 사항은 한국 본사의 기술인력 및 시공실적 인정과 외상기업의 내수시장 참여 기회 확대 (합작 조건 완화 또는 제거) 임
- 한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국제협상을 통한 공정경쟁 및 제도적 투명성 확보
 - 중국 내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 한국업체 간 과당경쟁 제어 및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지업체와의 합작 등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
 -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지원

1. 한국 건설업의 중국사업 확대 방안

- 향후 중국시장에서 추구해야 할 사업모델로는 단독 수주보다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한국이 건설 프로세스별로 각자의 강점을 조합하는 **패키지 모델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동반수주**
- 협력 시 한국의 강점에 대해서는 **사업관리(공사관리), 사업기획 및 사업성 관리 역량, 하이테크 분야 전문업체 기술 역량, 디자인 역량 등을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약점은 인건비 경쟁력, 현지 행정처리 및 협력업체 관리, 구매파워 및 자금유통 분야 등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바람직한 패키지 모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관리와 디자인, 중국의 노동력과 행정처리 능력의 결합
 - 제3국에서 한국의 사업수행관리, 중국의 자금조달 및 인력의 컨소시엄 구성
- **패키지를 통한 한중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남
 - 친환경 분야에서 한국 내 엔지니어링 이용과 설비 공급
 - 신형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사업기획 및 공사관리는 한국이, 투자재원 확보는 중국이 하는 방식

- [PPP에 대한 사업적 전망]은 아직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시장에서 PPP분야가 재정사업 분야보다는 자국업체 보호 강도가 낮겠지만 **중국시장은 국유기업들이 건설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기회는 제한적임
 - 전략적 활용 시점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봄
- PPP사업 복합 시행 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은 일반 협력모델 수행 시와 비슷하게 나타남
 - (강점)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 설계의 창의성 및 기술 역량
 - (약점) 행정처리 능력, 현지 금융조달 능력
- PPP분야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여지는 사업분야는 **도시환경 분야**로 나타남
- PPP분야에서 **한중협력 사업수행체계 모델**로는 아래와 같은 모델이 제안됨
 - 한국,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 중국, 인허가 및 대정부 보증 확보
 - 공동, 금융조달

1.2. 한국건설의 중국사업 확대방안

1.2.1. 제도 및 운영상 애로요인 개선

- 한중협상을 통해 **한국 본사의 기술인력 및 시공실적 인정과 외상기업의 내수시장 참여 기회 확대 (합작 조건 완화 또는 제거)를 제의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제도적 문제 외에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운영상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내수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국 국내기업과 협작을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업체와의 협작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 현지 자금유통이나 구매 관리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 내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 현지 발주자 및 프로젝트 전망 등에 대한 정보 채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지원 체계 구축**
 - **한국업체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생 협력체계 구축**

1.2.2. 중국업체와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중국사업 활성화

- 중국의 시장 실태와 한국업체의 근본적 약점, 비교우위 분야에 입각하여 향후 중국시장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시장은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단순 수주 차원의 접근으로는 사업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시장이며, 우리가 **특화해야 할 분야와 지역 등 세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임**
- 한국업체가 중국에서 아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는 EPC (Financing이 포함된 경우), 전문 엔지니어링 및 플랜트 건설 등이 거론됨
 - 설계, PM, CM, Technical 서비스 업체 등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offshore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함
- 지멘스 등 선진사들은 엔지니어링이나 Planning, Design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전략이며, 사업분야 선정도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수요를 파악한 후 친환경/에너지/수처리/정보기술 등 분야를 특화해서 접근**하고 있음

1. 한국 건설업의 중국사업 확대 방안

- 일반 토목, 건축 분야 뿐 아니라 플랜트 분야에서도 우리 업체의 강점은 제한적이며, EPC도 수익성이 그리 높지 않아 사업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음
 - 고수익성을 누릴 수 있는 원청 수준의 사업모델이 필요하지만 **기술적 강점이 있느냐가 고민스러운 점임**
- 따라서, 우리의 강점 분야로 인식되는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 분야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향유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느냐가 중요**
 -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중국과 한국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중국 각 지방과 중국 주변국에 대한 동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패키지 모델이 필요함**
 - 중국 국내업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일대일로 사업 등 중국 주변 지역의 건설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 단순한 수주 전략 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협력사업모델 구축을 전제로 PPP나 국제협상 등을 활용하여 사업 여건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활동이 바람직할 것임**
 - 그리고, 중국업체와의 패키지는 꼭 중국국내 사업에서 시작할 이유는 없으며, 제3국에서의 유대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중국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중국은 중앙정부 정책이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이 더 중요하므로 **각 지역별 특화된 패키지 사업모델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1.2.3. PPP 동향 및 대응 방향

- 작년부터 중국에서 PPP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핵심은 투자유치임. 즉, 금융을 연계하는 능력이 없으면 PPP사업은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장임
 - 발전소, 수처리 등 분야에서 PPP를 하게 되면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납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중국 로컬 업체를 고수할 수는 없음.
 - 글로벌 소싱을 하여 특화된 설계업체, 특화된 시공업체, 특화된 금융이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가야 되며, 현지업체 중 평판좋은 업체가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한국업체도 금융,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의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임
-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해외 투자보다는 중국 국내의 국유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에 있을 수도 있음

- 이처럼, 아직까지 PPP사업에 대한 중국 정부 내 주체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규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PPP는 정부의 Guarantee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임**
 - 또한, 중국내에서 PPP의 의미가 여타 국가들이 생각하는 PPP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중국 큰 회사들의 상당수가 국영기업이므로 PPP는 민간/정부 협력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영기업/지방정부 협력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음**
- 종합해보면, **PPP시장도 현실적인 기회가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초기에는 시공을 가져가는 정도의 대규모 지분 투자보다는, **소규모 지분 투자를 하고 Operation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정도의 참여를 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전략을 모색**
 - 또한, 건설 자체보다는 **장기적 management를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

2.1. WTO와 FTA, AIIB 관련 설문조사

- 설문조사 및 전문가 회담에 참여한 기업들의 입장을 보면 기업들은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건설업체 시장진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GPA 가입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정부는 기술자 유지 조건이나 합작 조건을 계속 유지하려 함
 - 국내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자 보유 조건 및 기술자 인증조건, 허가와 인증조건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들이므로 내국민대우를 요구하는 국제협정을 통해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내용들임
 - 그리고, 중국진출 차원에서는 국내 기술자 인정 및 상호 자격인정 등의 조치를 원하지만, 국내시장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술자 인정제도를 원하지 않는 등 국제협상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요구를 제시하고 있음
- 한중FTA도 아직은 한국 건설업체 시장진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 상기 조건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체결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효과가 보이지 않음

2. 중국의 건설시장 개방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

- 기업들은 WTO GPA나 한중FTA에서 향후 협상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호사항이 없음
 - 정부조달 시장개방(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모두)
 - 시장개방 (합작조건 제거, 기술자 유지 조건 제거)
 - 입찰정보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세계은행이나 ADB 프로젝트**는 외국기업들에게 입찰기회를 비교적 많이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은 여기에 큰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인프라 건설 분야보다는 중소도시나 낙후지역 등에 대한 소규모 교육, 환경 사업 등이 위주가 되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정보 구득 노력 대비 이득이 없다고 보는 듯함**
 - 세계은행과 ADB 프로젝트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협회나 KOTRA 차원에서 세계은행 / ADB / IADB / AIIB 등 국제기관에서 한국의 주요 관심국에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공고를 검색하여 업체에 배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업들은 **AIIB는 중국시장진출보다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도구로 유용할 것으로 간주함**
 - 그러나 중국 국내 사업도 일부 진행될 여지는 있으므로 여타 창립가입국과 함께 AIIB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중국 국내법과 관련없이 공정한 조건 하에 외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AIIB 규율에 명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2. 중국건설시장 개방 확대 및 규제개선 전략

2.2.1. GPA 또는 FTA를 통한 시장 개방 범위 확대

- GPA 또는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건설시장을 개방하고 합작의무화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
 - 중국은 WTO 가입시 GPA에도 가입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현재 가입협상을 진행 중임
 - 그러나 중국은 하한선 및 지방정부 포함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제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어 가입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중국이 GPA에 가입하기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지방정부나 공기업이 포함될 지도 미지수임
- 향후 중국 정부조달 건설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지방정부 인프라 건설로 예상되므로 지방정부 시장개방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함**
 - 차선책으로 지방정부 시장개방이 어렵다면 이를 빌미로 **중앙정부의 시장개방을 최대화하도록 함**
- GPA 또는 FTA로 BOT를 시장개방 범위에 확실히 포함시키면 PPP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2. 중국의 건설시장 개방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

- GATS와 한·미 FTA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은 건설서비스 511-518을 개방하고 있지만, **두 국가는 정부조달 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이 합작 외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또 일부는 한국이 한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므로 한·중 FTA에서 GATS 이상의 시장개방을 이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 국제협상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 같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상호호혜주의와 외국기업들을 국내기업들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내국민대우를 협상의 기초로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도 개방한다는 결단이 없으면 국제협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중국시장을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임
- 현재 WTO 가입이나 한·중 FTA는 한국 건설업체들의 중국진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정부는 건설서비스와 관련 국제협정을 협상할 때 **보호적인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GATS 수준을 넘지 않던지, 공격적인 입장을 통하여 GATS 이상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던지 단호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2.2.2. GPA, AIIB를 통하여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 및 입찰 공정성 확보

- 중국이 GPA에 가입하면 **GPA 조건에 맞게 국내 조달 관련 법, 규제와 절차를 개선해야 함**
 - GPA에서는 법과 규제의 투명성, 입찰기회의 공개, 자격심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및 절차의 공정성과 비차별성, 공개입찰 절차와 정보제공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사용을 제한
 - GPA는 국내법령과 규제의 공표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여타 GPA 회원국들의 기업들이 찾기 쉬운 방법으로 공표하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GPA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에 필요없이 차별적인 절차를 제거하기는 쉬워지지만, 국내업체들도 똑같이 지켜야 하는 규제나 절차를 제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 GPA는 정부조달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법과 규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협상 및 판례와 사례를 통한 일종의 규율도 존재함
- AIIB도 **유럽 선진국들이 AIIB 회원국이 됐으므로, 투명성 및 공개입찰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큼**
 - GPA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이나 ADB의 지원을 받는 경우, 세계은행이나 ADB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 한국도 유럽의 선진국과 함께 투명성 및 공개입찰을 의무화할 조건이 AIIB에 포함되도록 노력

2.2.3. 규제수렴을 통한 법과 규제의 개선

- 외국업체에게 **장애물이 되는 법이나 규제를 제거하기 가장 좋은 국제협정 도구는 규제수렴이 될 것임**
 - 외국기업도 국내 규제개혁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공인, 인증, 허가 등에 있어서 외국기업에게만 어려운 규제를 지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 그러나 중국 국내적으로 합당한 목적이 있는 규제는 제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중국이 제시하는 합당한 목적을 한국업체에게 좀 더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하는 대체규제나 규제대체방법을 발굴해야 하고, 이러한 방법의 발굴은 현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몫이 될 것임. 한국정부는 이러한 대체방법을 중국 규제당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주어야 함

2.2.4. 기업의 노력

- 한국기업이 국제적으로는 대기업으로 간주되지만, 중국 시장내 입장으로 보면, 한국기업의 중국내 지사의 자본규모나 여력 및 기술자 보유 숫자는 **중소 건설업체와 유사함**
 - 따라서 대규모 사업의 입찰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작은 프로젝트들의 수주를 통하여 적지만 꾸준한 소득을 추진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임
 - **세계은행이나 ADB는 큰 프로젝트보다 작은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수주하는데, 순수 중국 정부 프로젝트보다는 외국기업들이 참여하기가 다소 원활하므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더욱 많이 고려해야 할 것임**
 - 중소도시의 도로망 정비, 홍수장벽 건설 등 중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세계은행이나 ADB 수주 프로젝트에 포함됨
 - 중국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규모만 유지하고 있는 한국업체들이 단순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를 받기는 다소 무리이므로 **중소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국 고객들의 신뢰성을 키워야 할 것임**
- 규제수렴 조치가 도입되는 경우, 중국의 합당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한국기업에게 덜 차별적인 규제대체 방법을 발굴하도록 사전 준비를 함

3.1. 일대일로와 한중협력 필요성

-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를 통한 한중협력의 시너지효과 추구
 -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유럽 지역 국가들을 운송망과 에너지 공급망 등을 통해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차이점으로는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동북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임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 SRX) 실현, 북극항로 개발을 통한 유라시아 해상 연계, 전력·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를 함께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음
 - 제20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2014. 4), 중국 국제문제연구원-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회의(2015. 7), 한·중 정상회담(2015. 9. 3) 등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실제 진행됨
- **일대일로 사업 연선국 개발 시에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공생을 강구**해야 함
 - 한중 양국이 경쟁보다는 연선국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각국이 지닌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
 -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철도망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중국에 비해 자금력, 지리적 인접성 등에서 열세이며 반대로 물류단지, 물류네트워크시스템 건설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 강점을 지님
 - 한중 양국 기업은 에너지 등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양측 수요를 만족하고 개발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3.2. 일대일로와 한중 협력사업

- AIIB의 자금지원을 통한 동북아 고속철도망 시범사업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은 한반도중단철도(TKR)의 대륙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건설임. 또한 중국과 북한은 나진-훈춘프로젝트를 통하여 그 구간의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도 북한과의 연결을 전제로 하여 신의주-평양-개성구간의 교통인프라 건설에 합의함
 - 이 외에도 한중 열차페리, 한중 해저터널등의 건설 등 사업도 추후 구상
- 중국의 일대일로의 대상국(유라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동참
 - 일대일로 사업은 연선국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동시에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함. 따라서 중국은 연선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은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개발사업에 많은 노하우가 있기에 중국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
- 북한지역에의 한중FTA 역외가공지대 추가선정을 통한 북한지역의 활용
 - 한중FTA를 통하여 역외가공지대를 북한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중국기업이 북한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인 리스크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

- 세계은행 등이 발주하는 중국 지역별 건설 프로젝트 분석
 - 세계은행 웹사이트에서 세계은행이 지원한 중국 프로젝트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음
 - 이 데이터에서는 프로젝트의 종류와 지역을 설명하고 있음
 - 이 중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종류별, 지역별, 수주 금액별로 검토하면 중국 지역별로 어떠한 건설 작업의 수요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왜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이 ADB나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가?
 - ADB나 세계은행 프로젝트는 외국업체가 참여하기 비교적 쉽지만 한국업체의 참여가 부진함
 - AIIB 프로젝트들도 ADB나 세계은행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업체가 왜 국제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한국업체들은 AIIB를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임
- **Mega FTA에 대비한 건설부문 협상 전략 분석**
 - 건설부문(정부조달부문, 서비스 부문)에 대한 동향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진출 및 활동에 필요한 전략 분석
 - 이러한 방안을 통상협력 관할 부처에게 제시